

서울특별시 고령운전자 교통사고 예방을 위한 지원 조례 일부개정조례안

(김기덕 의원 발의)

의안 번호	1531
----------	------

발 의 년 월 일: 2024년 01월 26일
발 의 자: 김기덕 의원(1명)
찬 성 자: 김 경, 김규남, 문성호,
박철성, 이민옥, 이병도,
이상훈, 이소라, 이효원,
임종국, 정준호 의원(11
명)

1. 제안이유

- 고령운전자의 교통사고가 매년 증가하는 현시점에서 교통사고 위험 및 보행자의 불안감을 최소화하고, 고령운전자의 대중교통 이용 등 교통과 관련한 스마트 정보교육 지원 등의 근거를 마련하여, 운전면허 자진반납을 적극 유도
- 고령운전자 관련 실태조사의 결과와 대책을 시의회에 보고하도록 하여 실태조사의 후속조치를 명시하여 정책 시행의 실효성을 높이는 데 기여하고, 고령운전자 교통사고 예방사업 조항을 신설하여 안전한 운전을 위한 교통안전 교육 및 홍보 등을 유도하고자 함
- 그 외, 교육에 대한 전문성을 도모하고자 민간위탁에 대한 조항을 규정함

2. 주요내용

- 가. 운전면허 자진반납 및 스마트 정보교육에 대한 정의 조항을 신설함 (안 제2조 제2호 및 제3호)
- 나. 대중교통 이용 대책에 대한 시장의 책무를 신설함 (안 제3조 제2항)
- 다. 교통 이용관련 스마트 정보교육 지원 등에 대한 조항을 신설(안 제4조 제1항)
- 라. 실태조사 보고에 대한 사항을 신설함 (안 제5조 제3항)

마. 고령운전자 교통사고 예방사업에 대해 신설함 (안 제6조)

바. 고령운전자 대상 교육 시 민간위탁에 대한 조항을 신설함 (안 제7조 제3항)

3. 참고사항

가. 관계법령 : 「도로교통법」, 「지방자치법」 등

나. 예산조치 : 해당사항 없음 (비용추계 비대상사유서 별첨)

다. 기타 : 별도 작성내역 없음

서울특별시 고령운전자 교통사고 예방을 위한 지원 조례 일부개정조례안

서울특별시 고령운전자 교통사고 예방을 위한 지원 조례 일부를 다음과 같이 개정한다.

제2조 제목 외의 부분을 제1호로 하고, 같은 조에 제2호 및 제3호를 각각 다음과 같이 신설한다.

2. “운전면허 자진반납”이란 고령운전자가 본인 스스로 운전면허를 반납하는 것을 말한다.
3. “스마트 정보교육”이란 디지털 플랫폼을 통해 자료 또는 정보 이용의 효율을 높일 수 있도록 교육하는 것을 말한다.

제3조 제목 외의 부분을 제1항으로 하고, 같은 조에 제2항을 다음과 같이 신설한다.

- ② 시장은 운전면허를 반납한 고령운전자들이 대중교통 이용에 불편함이 없도록 대책을 마련하기 위해 노력하여야 한다.

제4조제1항에 제3호 및 제4호를 각각 다음과 같이 신설한다.

3. 교통 이용관련 스마트 정보교육 지원
4. 그 밖에 시장이 필요하다고 인정하는 사업

제5조에 제3항을 다음과 같이 신설한다.

③ 시장은 실태조사 결과와 대책을 서울특별시의회에 보고해야 한다.

제6조부터 제8조까지를 각각 제7조부터 제9조까지로 하고, 제6조를 다음과 같이 신설한다.

제6조(고령운전자 교통사고 예방사업) ① 시장은 고령운전자 교통사고 예방을 위하여 다음 각 호의 사업을 시행·지원할 수 있다.

1. 고령운전자의 안전한 운전을 위한 교통안전 시설의 정비
2. 고령운전자의 교통안전에 관한 교육 및 홍보
3. 그 밖에 고령운전자 교통사고 예방을 위하여 시장이 필요하다고 인정하는 사업

② 시장은 고령운전자 교통사고 예방사업의 효율적인 시행을 위하여 필요한 경우 관련 법인이나 단체, 전문교육·조사·연구기관 등에 제1항 각 호에 해당하는 사업을 수행하게 할 수 있다. 이 경우 사업을 수행하는 자에게 예산의 범위에서 필요한 경비의 전부 또는 일부를 지원할 수 있다.

제7조(중전의 제6조)에 제3항을 다음과 같이 신설한다.

③ 제2항에 따라 교육을 민간위탁 할 경우 그에 따른 절차 및 방법 등 필요한 사항은 「서울특별시 행정사무의 민간위탁에 관한 조례」를 준용한다.

부 칙

이 조례는 공포한 날부터 시행한다.

신 · 구조문대비표

현 행	개 정 안
<p>제2조(정의) “고령운전자”란 운전 면허를 받은 사람 중 서울특별시에 주민등록을 두고 거주하는 65세 이상의 사람을 말한다.</p> <p style="text-align: right; margin-right: 20px;"><신 설></p> <p style="text-align: right; margin-right: 20px;"><신 설></p>	<p>제2조(정의) 1. “고령운전자”란 -- ----- ----- -----.</p> <p>2. “<u>운전면허 자진반납</u>”이란 <u>고령운전자가 본인 스스로 운전면허를 반납하는 것을 말한다.</u></p> <p>3. “<u>스마트 정보교육</u>”이란 <u>디지털 플랫폼을 통해 자료 또는 정보 이용의 효용을 높일 수 있도록 교육하는 것을 말한다.</u></p>
<p>제3조(시장의 책무) (생 략)</p> <p style="text-align: right; margin-right: 20px;"><신 설></p>	<p>제3조(시장의 책무) ① (현행 제목 외의 부분과 같음)</p> <p>② <u>시장은 운전면허를 반납한 고령운전자들이 대중교통 이용에 불편함이 없도록 대책을 마련하기 위해 노력하여야 한다.</u></p>
<p>제4조(재정지원 등) ① 시장은 고령운전자가 「도로교통법」 제93조</p>	<p>제4조(재정지원 등) ① ----- -----</p>

제1항제20호에 따라 운전면허를 스스로 반납하여 운전면허 취소처분을 받은 경우 예산의 범위에서 다음 각 호의 지원을 할 수 있다.

1. 2. (생략)

<신설>

<신설>

② (생략)

제5조(실태조사) ①·② (생략)

<신설>

<신설>

-----.

1. 2. (현행과 같음)

3. 교통 이용관련 스마트 정보교육 지원

4. 그 밖에 시장이 필요하다고 인정하는 사업

② (현행과 같음)

제5조(실태조사) ①·② (현행과 같음)

③ 시장은 실태조사 결과와 대책을 서울특별시의회에 보고해야 한다.

제6조(고령운전자 교통사고 예방사업)

① 시장은 고령운전자 교통사고 예방을 위하여 다음 각 호의 사업을 시행·지원할 수 있다.

1. 고령운전자의 안전한 운전을 위한 교통안전 시설의 정비

제6조(교육) ① · ② (생략)

<신설>

제7조 · 제8조 (생략)

2. 고령운전자의 교통안전에 관한 교육 및 홍보

3. 그 밖에 고령운전자 교통사고 예방을 위하여 시장이 필요하다고 인정하는 사업

② 시장은 고령운전자 교통사고 예방사업의 효율적인 시행을 위하여 필요한 경우 관련 법인이나 단체, 전문교육·조사·연구기관 등에 제1항 각 호에 해당하는 사업을 수행하게 할 수 있다. 이 경우 사업을 수행하는 자에게 예산의 범위에서 필요한 경비의 전부 또는 일부를 지원할 수 있다.

제7조(교육) ① · ② (현행과 같음)

③ 제2항에 따라 교육을 민간위탁할 경우 그에 따른 절차 및 방법 등 필요한 사항은 「서울특별시 행정사무의 민간위탁에 관한 조례」를 준용한다.

제8조 · 제9조 (현행 제7조 및 제8조와 같음)

서울특별시 고령운전자 교통사고 예방을 위한 지원 조례

일부개정조례안 비용추계 비대상사유서

1. 판단 근거

- 서울특별시 고령운전자 교통사고 예방을 위한 지원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은 제4조(재정지원 등) 및 제6조(고령운전자 교통사고 예방사업)를 개정하려는 것으로 비용이 발생할 수 있지만 예산을 기편성하여 추진 중이므로 비용추계 대상에서 제외함

[참고] 2024년도 고령운전자 교통사고 예방 관련 분야별 예산 내역

조항	사업명	예산액(천원)
제4조 및 제6조	교통사망사고 줄이기	4,622,200

자료: 2024 서울시 예산서

2. 작성자

시의회사무처 재정분석담당관
담 당 관 오희선
추계세제팀장 이정수
주 무 관 김지혜
☎ 02-2180-7953
e-mail : kjh0123@seoul.go.kr

[붙임 1] 2024년 교통사망사고 줄이기 사업설명서

□ 사업내용

○ 위 치 : 서울시 전역

○ 규 모 :

- 교통안전교육 및 행사 운영 등
- 면허증 반납 어르신 교통카드 지원
- 교통사고 지점 교통시설 개선사업
- 보행자 안전을 위한 교통사고 지점 무단횡단 금지시설 등 교통안전시설 보강

○ 사업기간 : 2024. 1월 ~ 2024. 12월

○ 사업내용 :

- 면허증 반납 어르신 교통카드 지원, 교통안전 콘텐츠 개발, 교통안전 시민홍보 등
- 시 관리 도로 교통시설 안전진단 및 시설물 개선
- 교통사고 지점 교통시설 개선사업 및 보행자 안전시설 보강 등